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3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를 “토요일”로 한다.

-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표의 연가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u> <u>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u> <u>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u> <u>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u> <u>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u> <u>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u> <u>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u> <u>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u> <u>있는 경우</u> <u>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u> <u>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u> <u>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 <u>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u> <u>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u> <u>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u> <u>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u>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되,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 -----, 토요일-- 점심시간-----.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제18조 (연가일수) ① (생략)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출산	배우자	<u>1</u>

제18조 (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	<u>3</u>
-----	<u>6</u>
-----	<u>9</u>
-----	<u>12</u>
-----	<u>14</u>
-----	<u>17</u>
-----	<u>20</u>
-----	<u>21</u>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	----	<u>3</u>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3조의2)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강화하고 의무화하였음.
- 동 조항은 현행 공무원복무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나 정책, 개인 신상, 행정목적 달성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문화하였음.
- 구체적으로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중 외부에 공개되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직무상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 또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련된 사항 중 공개 시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동 조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공개 행정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의2에서는 토요일휴무와 관련하여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 실시 할 수 있도록 토요일 휴무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 안 제18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 2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나 동 조항의 개정은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으로 변경여지가 다소 있음.
- 안 별표 3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됨.